

## 외국법제동향

# 미국의 국제메건법 상 주요 쟁점

허경미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I. 들어가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Sex Offender Public Registry, 이하 SOPR)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지만,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란 일정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정보의 공개 및 범죄자처우, 성범죄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운용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는 단순히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 제한, 취업제한, 개인 간 접촉제한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인권침해라는 논쟁은 한국 뿐 아니라 이 제도가 가장 먼저 정착된 미국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sup>1)</sup>

미국은 「국제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을 제정하여 아동성범죄자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만 불이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밖으로 여행(이동)하려는 등록성범죄인에게 사전에 해외여행 계획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당사자의 여권에 성범죄자임을 알리는 식별표시(스탬프 마킹)를 하며, 범죄인의 정보를 상대국 가에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sup>2)</sup>

- 1 Perlin, M. L., & Cucolo, H. E. (2017). Shaming the Constitution: the detrimental results of sexual violent predator legislation. Temple University Press.
- 2 H.R.515 – International Megan's Law to Prevent Child Exploitation and Other Sexual Crimes Through Advanced Notification of Traveling Sex Offenders.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515/2020.2.10>.

물론 이 법의 취지는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이동을 제한하여 상대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즉 기존의 성범죄자 등록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이 미국 내에서만 당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한 정도에서 벗어나 미국 밖에서까지 행동을 제약한다는 것이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에서 정한 여권의 기준을 위반한다는 지적등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이 국제메건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 및 주요내용, 그리고 그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II. 국제메건법 제정까지의 여정

미국의 성범죄 등록 및 공개제는 1993년 「제이콥 웨터링법(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 Jacob Wetterling Act)」까지 가슬러 올라간다.<sup>3)</sup> 그리고 국제메건법은 성범죄자 등록제의 거듭된 진화의 최종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발전 여정을 살펴보는 것은 국제메건법을 제정하기까지 관련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 1993. 제이콥 웨터링법

「제이콥 웨터링법(Jacob Wetterling Act)」은 1993년 1월 5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sup>4)</sup>

---

3 SMART, Legislative History of Federal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https://www.smart.gov/legislation.htm/2020.2.10>.

4 1989년 11세로 납치된 제이콥 웨터링(Jacob Wetterling)을 추모하기 위해 그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납치 당시 11세였던 제이콥 웨터링은, 2016년 9월 1일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실종아동의 심각성 및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 및 유괴범에 대한 처벌강화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성범죄 피해 아동은 여아들뿐만이 아니라 남아 역시 매우 위험하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주정부가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성폭력으로 유죄가 선고된 성범죄자를 등록하고, 성범죄자의 주소를 10년 동안 매년 확인해야 하며, 성폭력 범죄자로 분류된 범죄자는 평생 동안 분기별로 거주지 주소를 통보, 확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주정부의 성범죄자 등록제를 강제하였으나 그 공개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 2. 1996. 연방메건법

『연방메건법(Federal Megan's Law)』은 1996년 3월에 제정되었다.<sup>5)</sup> 연방메건법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성범죄자 등록기관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주정부등록 프로그램이 수집한 정보는 주법에 따라 허가된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주정부 및 연방법집행기관이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 3. 1997. 제이콥 웨터링 개정법

『제이콥 웨터링 개정법(Jacob Wetterling Improvements Act)』은 1997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각 주정부 및 등록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업무관할 및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이다.<sup>6)</sup> 구체적으로, 각 주정부는 성범죄자 정보를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하 FBI)에 통보하는 책임기관을 선정하도록하고, 거주지를 변경한 등록자에게 새로운 등록의무를 부과, 등록대상자의 직장 및 학교 등에 대상자통보와 등록, 각 주정부에게 국가성범죄자등록(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 이하 NSOR)의 지시를 받을 의무부과, 교도소 석방 등록대상자에 대한 통보의무 등이다.

5 42 U.S.C. 14071(d)). 이 법은 뉴저지 주의 해밀턴시의 1994년 7세 된 여아 메건 칸카(Megan Kanka)가 이웃집의 아동성폭력범에게 강간된 후 살해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메건의 부모가 성범죄자는 반드시 지역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입법청원운동을 벌였고, 시민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뉴저지 주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다른 주정부에서도 메건법을 제정하였고, 연방정부 역시 연방메건법을 제정한 것이다. megans-law.net, <https://web.archive.org/web/20030603161826/http://www.megans-law.net/2020.2.10>.

6 H.R.1683, 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s Registration Improvements Act of 1997.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05th-congress/house-bill/1683/2020.2.10>.

## 4. 1998. 흉악 성범죄에 대한 아동보호법

「흉악 성범죄에 대한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은 1998년에 제정되었다.<sup>7)</sup> 주요내용은 연방정부의 법무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이 주정부의 성범죄자관리지원프로그램(Sex Offende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이하 SOMA program)을 지원하고, 연방정부의 기금이 성범죄교도소 수용자의 인터넷접속지원금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독하거나 야동포르노 등을 구입하는 등의 일탈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 5. 2000. 캠퍼스 성범죄예방법

「캠퍼스 성범죄예방법(Campus Sex Crimes Prevention Act)」은 2000년에 제정되었다.<sup>8)</sup> 주요내용은 등록된 성범죄자가 각 교육시설에 종사하거나 학생이었거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학교당국 및 주정부 등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 6. 2003. 보호법

「보호법(PROTTECT Act)」은 2003년에 제정되었다.<sup>9)</sup> 주요내용은 각 주정부는 정보등록 웹사이트를 만들고, 연방법무부는 이를 웹사이트를 연결하도록 하며, 각 주정부의 비용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 7. 2006. 아담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

「아담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은 2006년 7월 27

- 
- 7 S.2491 –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of 1998,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05th-congress/senate-bill/2491?s=1&r=85/2020.2.10>.
- 8 20 U.S.C. Section 1232g. US Department of Education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www2.ed.gov/policy/gen/guid/fpcos/hottopics/ht10-24-02.html/2020.2.10>.
- 9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S.151 – PROTECT Act.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08th-congress/senate-bill/151/2020.2.10>.

일에 제정되었다.<sup>10)</sup> 주요내용은 연방의 법무부의 성범죄자 선고, 감시, 체포, 등록 및 추적실(Sex Offender Sentencing, Monitoring, Apprehending, Resigtering, and Tracking Office: SMART Office)이 성범죄자 등록, 통보를 관리하며, 이를 위해 성범죄자 선고, 모니터링, 등록 및 추적시스템을 작동하고, 성범죄자 통보 및 등록 표준 규정 및 관리. 각 주정부 및 연방정부 법집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담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국가성범죄자공식등록(National Sex Offender Public Registry: NSOPR)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성범죄공식등록은 연방정부 법무부 산하의 성범죄자 선고, 감시, 체포, 등록 및 추적실(SMART Office)이 담당한다.<sup>11)</sup>

성범죄자 선고, 감시, 체포, 등록 및 추적실(SMART Office)의 주요업무는 아담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의 시행에 관한 지침을 연방 법집행기관 및 주정부에 제공하고, 국가성범죄자공식등록(NSOPR)을 운영하며, 각종 기술 및 성범죄자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조금 배분, 성범죄자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 및 성범죄자의 등록, 신고 및 관리와 관련된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한편 미국의 국가성범죄자등록(NSOPR)은 2005년에 개설되었지만, 2006년에 「아담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에 따라 그 명칭이 국가성범죄자등록웹사이트(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 이하 NSOPW)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및 미국 50개주 모두가 공유하는 성범죄자등록시스템이 2006년부터 작동되었다. 따라서 국가성범죄자등록웹사이트(NSOPW)는 미국의 유일한 연방 및 모든 주정부가 공유하고 공개하는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웹사이트이다.

미국의 학부모, 고용주 및 주민들은 이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웃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주 및 지역 사회에서 거주, 근무 및 보호관찰소 등에 출석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성범죄자등록웹사이트(NSOPW)은 주소지, 이름, 우편번호, 도시/마을 등의 다양한 검색어로 검색이 가능하다.<sup>12)</sup>

10 H.R.4472 –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09th-congress/house-bill/4472/2020.2.10>.

11 SMART, <https://www.smart.gov/2020.2.10>.

12 NSOPW, <https://www.nsopw.gov/2020.2.10>.

## 8. 2015. 군인 성범죄자 통보법

군인 성범죄자 통보법(Military Sex Offender Reporting Act)은 2015년에 제정되었다.<sup>13)</sup> 주요내용은 국방부는 군사법원을 통해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모든 군인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NSOR 및 국가성범죄자등록웹사이트(NSOPW)에 제출하여 이들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9. 2016. 국제메건법

국제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은 2016년 2월 2일에 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여행의 사전통지를 통한 성범죄자의 아동 및 그 외 성범죄예방법(Law to Prevent Child Exploitation and Other Sexual Crimes Through Advanced Notification of Traveling Sex Offenders)」이다.<sup>14)</sup>

앞서 1993년 「제이콥 웨터링법(Jacob Wetterling Act)」의 제정 이후부터 2015년 「군인 성범죄자 통보법(Military Sex Offender Reporting Act)」이 미국 정부가 꾸준하게 추진한 성범죄자에 대한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다면 국제메건법은 미국 밖에서의 성범죄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등록성범죄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21일 전에 주소지의 등록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여권에 특정성범죄자(covered sex offenders) 임을 표시하는 식별표식을 새기도록 하며, 연방보안관실(U.S. Marshals Service)이 당사자의 여행정보를 인터폴을 통하여 상대국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정성범죄자란 미성년자 유괴, 감금, 성적 행위, 성적 행위에 대한 권리, 성적 행위나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비디오 촬영, 아동 포르노 범죄 등을 말한다.<sup>15)</sup>

---

13 S.409 – Military Sex Offender Reporting Act of 2015.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409/text/2020.2.10>.

14 International Megan's Law, Pub. L. No. 114-119, § 8, 130 Stat. 24 (2016).

15 Id. § 20911(7)(A)-(I) (Supp. V 2017).

### III. 국제메건법의 쟁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제메건법의 등장은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 특히 개인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취업제한 등의 범주를 미국 내에서 국제사회로까지 확대하는 근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여러 우려스런 주장들이 있다.

#### 1. 미국 수정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국제메건법의 기본 취지가 미국 내에서만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국제사회로까지 이어지자 성범죄자 등록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적 다툼이 여러 주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적 다툼은 성범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인권단체들도 가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2016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미시간 주의 성범죄자등록사무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sup>16)</sup>.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미시간주정부는 성범죄자등록소를 폐지하지 않고 이를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 중에 있다.<sup>17)</sup>

국제메건법은 기존의 연방메건법을 포함한 일련의 성범죄자등록 및 공개 관련 입법의 연장선상에 있고, 성범죄자 등록제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사실을 해당국에 통보하는 것은 더 심각한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sup>18)</sup>

16 Does v. Snyder, 834 F.3d 696, 705–06 (6th Cir. 2016).

17 ABC57, ACLU pushes for removal of sex offender registry,  
<https://www.abc57.com/news/aclu-pushes-for-removal-of-sex-offender-registry/2020.2.10>.

18 Porte, R. W. (2017). Sex Offender Regulations and the Rule of Law: When Civil Regulatory Schemes Circumvent the Constitution. Hastings Const. LQ, 45, 715.

## 2. 법원의 고민과 갈등

연방법원간 성범죄자 등록제의 위헌성 인정여부에 대한 태도가 다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미시간주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미시간 주 성범죄자등록소가 일정한 과학적 증거, 즉 성범죄자 등록제가 실제로 얼마나 성범죄를 억제하는지에 대한 자료(증거)를 확실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법익(잠재적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적 법익(프라이버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Smith v. Doe* 재판을 통해 알래스카의 성범죄자 등록이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무섭게 높기 때문에” 공공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결했다.<sup>19)</sup> 즉, 연방대법원은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적 증거를 바탕으로 알래스카의 신상등록제 등의 합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자의 재범에는 개인의 인성, 교화정도, 수감의 경험,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며, 성범죄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양한 범죄학적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성범죄자의 경우 획일적으로 이들의 여행 정보를 상대국가에 통보하는 것은 개인의 재범위험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형사사법적인 조치라는 비난이다.<sup>20)</sup> 결국 개인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여행을 포기도록 함으로써 상대국가에서의 잠재적인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입법취지 역시 성범죄자는 곧 재범자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무엇보다 이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들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가 성범죄자의 재범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sup>21)</sup>

## 3. 국제기구의 남용과 월권 부담

미국이 국제메건법을 통해 자국 성범죄자 여권에 성범죄자는 스템프를 찍는 것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경 통제 관리에 관한 여행자 식별 프로그램 지침(ICAO Traveller Identification Programme Guide on

---

19) *Smith v. Doe*, 538 U.S. 84, 103 (2003).

20) Levenson, J. S., Grady, M. D., & Leibowitz, G. (2016). Grand challenges: Social justice and the need for evidence-based sex offender registry reform. *J. Soc. & Soc. Welfare*, 43, 3.

21) Zgoba, K. M., Jennings, W. G., & Salerno, L. M. (2018). Megan's law 20 years later: An empirical analysis and policy review.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5(7), 1028–1046.

Border Control Management)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sup>22)</sup> 즉, 이 지침 중 일부에는 인터폴에 수배자로 등록된 범죄자를 식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경우 수배 여행자를 발견한 해당국은 이를 형사사법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 수배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국제메건법은 성범죄의 정보를 인터폴에 통보하여 이를 여행국에 전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터폴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sup>23)</sup> 인터폴은 회원국 및 유엔기구로부터 통보된 여덟 가지 유형의 수배대상자들에 관한 정보를 회원국에 알리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통로이자 회원국 간 형사사법 협력시스템 유지를 컨트롤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미국이 수배자가 아닌 자국인 성범죄자 정보를 여행대상지 국가에 전달도록 하는 통로로서 인터폴을 활용하는 것은 인터폴의 창설취지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sup>24)</sup>

## 4. 국가가 찍는 주홍글씨

특정성범죄자(covered sex offenders)라는 식별표시를 여권에 마킹함으로써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사회적 낙인, 즉 주홍글씨(scarlet letters)를 찍는다는 비난도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Shield of David, Magen David)이라는 노란색 별 표식을 가슴에 달고 다니도록 하는 탄압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sup>25)</sup>

즉, 여권은 여행목적 이외에도 자신을 증명하는 다양한 기능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업, 은행계좌, 학교입학, 공공기관출입 등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여권에 아동성범죄자임을 주홍글씨처럼 표시하여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함께 가져오며, 결국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 ICAO, ICAO TRIP Guide BCM Part 1–Guidance.pdf/2020.2.10.

23 INTERPOL, What is INTERPOL?, <https://www.interpol.int/en/Who-we-are/What-is-INTERPOL/2020.2.10>.

24 INTERPOL, About Notices, <https://www.interpol.int/en/How-we-work/Notices/About-Notices/2020.2.10>.

25 Washington Post, The yellow star, the scarlet letter, and ‘International Megan’s Law’,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6/01/06/the-yellow-star-the-scarlet-letter-and-international-megans-law/2020.2.10>.

## 5. 인간의 존엄성

국제메건법은 성범죄자의 해외여행의 목적을 지나치게 성매매(sex trafficking) 혹은 성관광(sex tourism)으로만 한정짓고 이들의 여행을 제한하려는 입법취지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성범죄자의 행동에 대한 선입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의 모든 행동을 성적인(sexual) 것으로만 해석하고 귀착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dignity)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sup>26)</sup>

## IV. 나가며

미국은 국제메건법을 제정하기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제재, 특히 이들의 정보를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취업제한과 주거제한, 전자발찌제, 약물치료제 등의 잠재적 성범죄 억제정책을 개발하고 도입하였다. 일부 제도는 재범억제라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서둘러 오히려 사회적 지지확보가 더딘 경우도 있다.

국제메건법상 여권에 성범죄자표식제나 여행국가에 대한 통보제 역시 아직은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권 침해적 소지와 국제민간항공기구나 인터폴 등의 운영 및 기능을 벗어나는 점, 성범죄자의 재범률과 등록제의 상관성 등에 대한 과학적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도 국제메건법의 적극적인 시행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

26 Cull, D. (2018). International Megan's Law and the Identifier Provision—An Efficacy Analysis. *Wash. U. Global Stud. L. Rev.*, 17, 181.

## 참고문헌

- ABC57, ACLU pushes for removal of sex offender registry,
- [https://www.abc57.com/news/aclu-pushes-for-removal-of-sex-offender-registry/2020.2.10.](https://www.abc57.com/news/aclu-pushes-for-removal-of-sex-offender-registry/2020.2.10)
- Cull, D. (2018). International Megan's Law and the Identifier Provision—An Efficacy Analysis. Wash. U. Global Stud. L. Rev., 17, 181.
- H.R.515 – International Megan's Law to Prevent Child Exploitation and Other Sexual Crimes Through Advanced Notification of Traveling Sex Offenders.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515/2020.2.10.](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515/2020.2.10)
- ICAO, ICAO TRIP Guide BCM Part 1—Guidance.pdf/2020.2.10.
- INTERPOL, What is INTERPOL?, [https://www.interpol.int/en/Who-we-are/What-is-INTERPOL/2020.2.10.](https://www.interpol.int/en/Who-we-are/What-is-INTERPOL/2020.2.10)
- INTERPOL, About Notices, [https://www.interpol.int/en/How-we-work/Notices/About-Notices/2020.2.10.](https://www.interpol.int/en/How-we-work/Notices/About-Notices/2020.2.10)
- Levenson, J. S., Grady, M. D., & Leibowitz, G. (2016). Grand challenges: Social justice and the need for evidence-based sex offender registry reform. J. Soc. & Soc. Welfare, 43, 3.
- megans-law.net, [https://web.archive.org/web/20030603161826/http://www.megans-law.net/2020.2.10.](https://web.archive.org/web/20030603161826/http://www.megans-law.net/2020.2.10)
- NSOPW, [https://www.nsopw.gov/2020.2.10.](https://www.nsopw.gov/2020.2.10)
- Perlin, M. L., & Cucolo, H. E. (2017). Shaming the Constitution: the detrimental results of sexual violent predator legislation. Temple University Press.
- Porte, R. W. (2017). Sex Offender Regulations and the Rule of Law: When Civil Regulatory Schemes Circumvent the Constitution. Hastings Const. LQ, 45, 715.
- SMART, [https://www.smart.gov/2020.2.10.](https://www.smart.gov/2020.2.10)
- SMART, Legislative History of Federal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https://www.smart.gov/legislation.htm/2020.2.10.](https://www.smart.gov/legislation.htm/2020.2.10)
- Washington Post, The yellow star, the scarlet letter, and 'International Megan's Law',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6/01/06/the-yellow-star-the-scarlet-letter-and-international-megans-law/2020.2.10.](https://ww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6/01/06/the-yellow-star-the-scarlet-letter-and-international-megans-law/2020.2.10)
- Zgoba, K. M., Jennings, W. G., & Salerno, L. M. (2018). Megan's law 20 years later: An empirical analysis and policy review.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5(7), 1028–1046.